계약업무 규정

-목 차-

제1장 총 칙	295	제23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1조 목적		제24조 경매	
제2조 적용범위		제2절 제한경쟁 계약	303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5조 제한경쟁에 의할수	
제2장 계약의 방법	296	있는 경우 제26조 입찰자의 제한	
	296	제27조 준용규정	00#
제4조 예정가격의 비치		제3절 지명경쟁 계약	304
제5조 예정가격의 결정		제28조 지명경쟁에 의할수 있는 경우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제 29조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가격의 결정		지명	
제7조 예정가격의 변경		제30조 지명경쟁계약의 비치서류	
제8조 입찰의 성립		제31조 준용규정	
제9조 입찰자격 요건		제4절 수의계약	305
제10조 입찰참가 제한		제32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1조 입찰공고		제33조 수의계약의 비치서류	
제12조 입찰참가의 통지		제34조 준용규정	
제13조 입찰참가 신청		제3장 계약체결	307
제14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35조 계약의 원칙	
제15조 공사의 입찰		제36조 계약처리 절차	
제16조 물품의 제조·구매		제37조 계약체결 의뢰	
및 용역등의 입찰			
제17조 입찰방법		제38조 계약체결	
제18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제39조 계약서 작성생략	
제19조 입찰무효		제40조 계약보증금	
제20조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제41조 하자보수보증금	
제21조 개찰		제42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제22조 낙찰		제43조 하자검사	

제44조 보증금의 귀속 제45조 지체상금 제46조 계약조건 변경 등 제47조 계약이행의 감독 및 검수 제48조 법령준용 부 칙 310 ① (시행일) ② (경과조치)

계약업무 규정

2005. 04. 06 제정, 2006. 06. 22 개정 2007. 03. 22 개정, 2011. 09. 06 개정 2015. 11. 09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재무회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ECO융합섬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계약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계약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연구원의 채권, 채무 발생에 관계되는 계약업무를 수행하도록 원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개정11.09.06〉
 - 2. "계약당사자"라 함은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제2장 계약의 방법 제1절 일반경쟁 계약

제4조(예정가격의 비치)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가격은 재무회계 규정 제46조에 의한다.

제5조(예정가격의 결정)

- ①재무회계규정 제50조에 의한다.
- ②제32조 제8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인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사, 제조,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등 원가계산원칙의 총원가로 하며, 이에 준하여 공사원가계산서(별표1호) 또는 제조원가계산서(별표2호)를 작성한다. ②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 2. 통관료
- 3. 보세창고료
- 4. 하역료
- 5. 국내운반비
- 6. 신용장개설수수료
-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100분에 8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100분에 10을 곱한 금액

- ③공사, 용역, 제조 등에 대한 원가계산서의 작성이 필요할 시에 구매 요구부서에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계약담당부서는 원가계산을 확인한 후 예정 가격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자체 원가계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원가 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예정가격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에 의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 제9조(입찰자격요건) ①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당해 입찰의 목적물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 하고 있을 것
 -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3. 보안 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자
 - 4. 기타 법인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 ②전항 제2호의 유효 시기는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③제1항 각호의 사실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입찰참가 제한)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하게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3.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2회 이상 입찰 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 4.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경락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5.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 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8. 제9조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9. 법인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법인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 10.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증회한 자
- 11. 정부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자
- 12.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업체가 상호 등은 변경하였으나, 면허번호 또는 법인등록 번호가 동일한 경우
- 제11조(입찰공고)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재무회계규정 제45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입찰참가의 통지) 계약담당자는 당해 입찰참가 적격자에 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표3호 서식의 경쟁 입찰참가통지 서에 의한다.
- 제13조(입찰참가 신청) ①계약담당자는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

고자 할 때에는 응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1. 입찰참가신청서(별표4호)
- 2. 자격증빙 서류
- 3. 기타 공고로서 요구한 서류
- ②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③구매담당부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5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 제14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 5. 공사입찰의 경우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 6.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②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의 입찰)①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에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및 사양설명조서(별표6호)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략할 수있다.

②제1항의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기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회계규정 제45조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1.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5일 이상
- 2.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일 이상
- 3.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20일 이상
- 4.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33일 이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 있어서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①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해야 한다.

③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입찰방법) ①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표 7호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에 대한 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기장한 내역서를 첨부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 ③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별표 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④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에 확인 인을 날인하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 (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 ⑥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 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18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별표 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재무회계규정 제4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②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별표 제8호 서식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각서는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입찰무효) 입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경우
 -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고 한 경우
 -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5.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이 누락된 경우
 - 6. 법인이 제시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경우
- 제20조(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제21조(개찰)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지정된 일시에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유효한 입찰에 참가자의 입찰서 상의 금액과 기타 조건을 입찰 참가자 면전에서 공표하여야 한다.
- 제22조(낙찰) ①계약담당자는 유효한 입찰 참가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제2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제24조(경매) 계약담당자는 부동산, 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요령에 준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다.

제2절 제한경쟁계약

- 제25조(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에 비추어 목적달성을 위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한경쟁에 붙일 수 있다.
 - 1. 특수한 장비, 기술 또는 공법에 의한 공사의 경우
 - 2.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에 의한 제조의 경우
 - 3.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입의 경우

- 4. 기타 제한경쟁이 계약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26조(입찰자의 제한)①계약담당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한할 수 있다.
 - 1. 공사, 제조 또는 판매실적
 - 2. 기술자 또는 장비보유상황
 - 3. 경영상태
 - 4. 기타 계약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계약담당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와 함께 그 제한기준을 공고하여 입찰참가 등록을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제한기준을 미리 공고하여 당해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당해 적격자에게 통지하고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준용규정)기타 제한경쟁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경쟁계약 사항을 준용한다.

제3절 지명경쟁계약

- 제28조(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2.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기격이 1억원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 3.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6.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29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①계약담당자는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자에게 지명통지를 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0조(지명경쟁계약의 비치서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31조(준용규정) 기타 지명경쟁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경쟁계약 사항을 준용한다.

제4절 수의계약

제32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 4. 재공고 입찰 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1차 입찰 시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5. 운영위원회 및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장비의 경우
- 6.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 성능 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라. 특허공법에 의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 바.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사.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 아.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 7. 추정가격이 2,000만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기타계약의 경우<개정11.09.06>

-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 하도록 하는 경우
- 9. 기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준용(개정11.09.06)
- 제33조(수의계약의 비치서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34조(준용규정)기타 수의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및 지명경쟁계약 사항을 준용한다.

제3장 계약체결

- 제35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재무회계규정 제6장에 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계약조건을 제시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36조(계약처리절차)①연구원의 모든 계약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한다.
 - 1. 당해 계약의 예산성립 확인
 - 2. 집행계획의 품의(계약내용과 추정 소요액 등의 명시) 및 예산통제
 - 3. 계약체결 의뢰
 - 4. 계약방법, 계약대상자 및 예정가격의 결정

- 5. 입찰집행
- 6. 계약체결
- 7. 계약체결 통보
- 8. 대가의 지급
-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의뢰자가 담당하고, 제4호 내지 제7호는 계약담당자가 담당하며, 제8호는 지출담당자가 담당한다.
- 제37조(계약체결의뢰)계약체결의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체결의뢰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1. 계약명 및 계약범위
 - 2. 계약기간
 - 3. 당해 계약의 필요성 및 효과(용역계약의 경우)
 - 4. 시방서 및 도면
 - 5. 계약대가 산정 내역
 - 6. 지출예산과목 및 세목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8조(계약체결)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지체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 1. 계약명
 - 2. 계약대상자
 - 3. 계약기간
 - 4. 계약방법 및 계약방법 결정근거 명시
 - 5. 주요 계약조건 및 기타 필요사항
 - ②계약담당자는 거래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반복수요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단가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단가계약기간은 6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제39조(계약서 작성 생략) 재무회계규정 제42조에 준한다.

제40조(계약보증금) 재무회계규정 제44조에 준한다.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준공검사 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3조(하자검사) ①계약담당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계약의뢰부서장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따로 검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뢰 부서장 또는 관계자는 하자검사를 행함에 있어 특히,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보증금의 귀속) 재무회계규정 제49조에 준한다.

제45조(지체상금) 재무회계규정 제43조에 준한다.

- 제46조(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의뢰부서장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 제47조(계약이행의 감독 및 검수)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적정한 계약이행 상태를 확인 하여야 하며, 계약서, 시방서 등 검수 비본 서류를 첨부, 검수담당자에게 검수 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검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8조(법령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다.

부 칙

(2005.04.06), (2006.06.22), (2007.03.22.), (2011.09.06.), (2015.11.09)

-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호]

		공 /	사원기	- 계 -	산	서		
공	사명	:		공시	가기간	:		
비	목		구 분	금 🤄	백	구 성 비	비	고
	재	직접 재료비						
	료	간접 재료비						
	비	작업 부산물 등(△)						
	·	소계						
	노	직접 노무비						
	무	간접 노무비						
	月	소계						
		전력비						
		수도, 광열비						
		운반비						
순		기계경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원		가설비						
		지급 임차료						
)	보험료						
	경	복리후생비						
	刊	보관비						
7]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폐기물 처리비						
		도서 인쇄비						
		지급 수수료						
		기타 •						
		· 소 계						
		<u> </u>)%					
		이 윤()%					
		<u> </u>	가					
		o 'U	<u> </u>					

[별표 2호]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	명	:	생 산 량 :				
단 위: 규 격: 제조기간:							
刊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고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 부산물 등(△) 소 계					
	노	직접 노무비					
	무	간접 노무비					
-	刊	<u>소</u> 계 전력비					
순		수도, 광열비 운반비					
제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조		시험검사비					
	경	지급 임차료					
	0	보험료					
원		복리후생비					
가	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폐기물 처리비					
		세금과공과					
		연구개발비					
		기타 •					
		•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원 가					

[별표 3호] <개정 14.06.25, 15.11.09>

			(일 제 지	반 경	쟁 역	입 찰 :	참 기	· 통 지] 서		
입	상호	또는 법	 인명칭				법인	등록번호			
찰	주		소				전 호	한 번 호			
참 가	대	丑	자				생내	년월일			
자	입	찰 건	<u></u> 명								
입	현	장 설	명	일시 :				장소 :			
ㅂ 찰	입		찰	일시 :				장소 :			
내	입:	찰등록마김	일시			ļ	년	월	일	시까지	
용	서	류 제	출 처				(전화번호	:)
								년	열	일	
					ECO	융합섬	유연	구원			
		계약담당기	사 성	면		(印)					
							귀	ਨੌ-			

[별표 4호] <개정 14.06.25, 15.11.09>

		입 찰 참 가	· 신 청 서	
신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화 번호	
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개 요	입 찰 건 명			
입 찰	납 부	보증금율 :보증액 : 금보증금 납부방법 :	% 원정(₩)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차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		
대리인•사	본 입찰에 관한 역 자에게 위임합니다	납체의 권한을 다음의 라.	본 입찰에 사용힐 신고합니다.	인감을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	성 명 :생년월일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연구원의 일반(제한 •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연구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 참가 신청자 상 호:

대표자: (인)

(법인 또는 개인인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귀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필 증

공고번호 : 제 호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

귀하는 금번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의 일반경쟁 (제한 • 지명) 입찰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

계약담당자: (印)

귀하

[별표 6호]

현장및사양설명조서

공고 번호: 제 호

건 명: 현장설명일시: 현장설명장소: 현장설명입회인:

위 건의 설계도서(물품의 규격서, 사양서) 계약일반조항 및 기타사항을 충분히 습득, 청취 하여 누락됨이 없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현장설명청취자

주 소	회 사 명	대표자	정취자	印

[별표 7호] <개정 15.11.09>

		이	칟	발 서				
입 찰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입 찰 건 명					·			
입 찰 금 액	급			원정 (₩)부	-가세포	함
준공(납품) 연월일								

본인은 귀 연구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 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이 입찰이 귀 연구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 동 특수조건 •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 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 • 용역)를 완성(제조 •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산출내역서(토목공사의 경우) 1부

년 월 일

입찰자 상호:

주 소:

대 표 자 : (印)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 귀하

[별표 8호] <개정 15.11.09>

입찰(계약)보증금 납부확약각서

입 찰 명: (계 약 명)

입찰 일시: 200 년 월 일

(계약년월일)

입 찰 금: 일금 원정

(계 약 금)

입찰보증금: 일금 원정

(계약보증금)

면제된 위의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을 입찰(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 (印)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 귀하